

장:(3000)경제개발비

관:(3100)농수산개발비

항:(31G0)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

세항:(31G1)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

[환동해출장소] (단위:천원)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
장,관,항,세항,세세항	목							
3000 경제개발비		52,355,719	[국 13,667,440	도 21,693,279	기 0	균 16,845,000	분 150,000]	
3100 농수산개발비		52,355,719	[국 13,667,440	도 21,693,279	기 0	균 16,845,000	분 150,000]	
31G0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		11,304,518	[국 162,440	도 7,842,078	기 0	균 3,300,000	분 0]	
31G1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		6,185,480	[국 120,463	도 6,065,017	기 0	균 0	분 0]	
100	경상예산	4,335,480	[국 120,463	도 4,215,017	기 0	균 0	분 0]	
110	인건비	3,771,463	[국 120,463	도 3,651,000	기 0	균 0	분 0]	
	101 인건비	3,771,463						
		2,403,643	01 기본급					
			봉급					
			연봉제					
			3급					5,682,243원X1명X12월 = 68,187
			4급					5,208,872원X1명X12월 = 62,507
			일반직					
			4급					3,128,300원X2명X12월 = 75,080
			5급					2,843,100원X12명X12월 = 409,407
			6급					2,346,900원X15명X12월 = 422,442
			7급					1,924,300원X14명X12월 = 323,283
			[국 120,463	도 202,820	기 0	균 0	분 0]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
			8급	1,486,000원X6명X12월 = 106,992
			9급	994,800원X1명X12월 = 11,938
			기능직	
			6급	2,527,000원X3명X12월 = 90,972
			7급	2,062,000원X9명X12월 = 222,696
			8급	1,794,100원X14명X12월 = 301,409
			9급	1,335,100원X5명X12월 = 80,106
			처우개선비	2,044,322,000원X2.6% = 53,153
			상여금	
			정근수당	2,105,652,000원X1/12 = 175,471
		476,891	02 수당	
			정액수당	
			가족수당	
			배우자	30,000원X80명X12월 = 28,800
			부양가족	20,000원X150명X12월 = 36,000
			학비보조수당	
			중학생	47,700원X20명X4회 = 3,816
			고등학생	385,600X20명X4회 = 30,848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
			정근수당가산금	
			25년이상	130,000원X30명X12월 = 46,800
			20~25년미만	110,000원X11명X12월 = 14,520
			15~20년미만	80,000원X21명X12월 = 20,160
			10~15년미만	60,000원X10명X12월 = 7,200
			5~10년미만	50,000원X7명X12월 = 4,200
			위험근무수당	
			갑종	40,000원X22명X12월 = 10,560
			을종	30,000원X1명X12월 = 360
			모범공무원수당	50,000원X2명X12월 = 1,200
			대우공무원수당	2,346,900원X4.8%X32명X12월 = 43,259
			관리업무수당	3,128,300원X2명X9%X12월 = 6,758
			특수업무수당	
			기술업무수당	
			5급	50,000원X9명X12월 = 5,400
			6~7급	30,000원X18명X12월 = 6,480
			8~9급	20,000원X3명X12월 = 720
			기술업무가산금	30,000원X2명X12월 = 720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
			함정근무수당		
			기능6급	32,000원X3명X12월 =	1,152
			기능7급	25,000원X9명X12월 =	2,700
			기능8~9급	20,000원X10명X12월 =	2,400
			민원업무수당	30,000원X4명X12월 =	1,440
			장려수당(통신)	38,000원X1명X12월 =	456
			자동차운전수당	40,000원X1명X12월 =	480
			전산수당	50,000원X1명X12월 =	600
			시간외근무수당	7,210원X77명X30시간X12월 =	199,862
		129,480	03 정액급식비		
			정액급식비	130,000원X83명X12월 =	129,480
		124,920	04 교통보조비		
			4~5급	140,000원X14명X12월 =	23,520
			6~7급	130,000원X29명X12월 =	45,240
			8~9급	120,000원X7명X12월 =	10,080
			기능1~7급	130,000원X12명X12월 =	18,720
			기능8~10급	120,000원X19명X12월 =	27,360
		210,566	05 명절휴가비		

장:(3000)경제개발비

관:(3100)농수산개발비

항:(31G0)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

세항:(31G1)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

[환동해출장소] (단위:천원)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
			명절휴가비	2,105,655,000원X1/12X120%	= 210,566
		350,943	06 가계지원비		
			가계지원비	2,105,655,000원X1/12X200%	= 350,943
		60,888	07 연가보상비		
			연봉제	130,694,000원X66%X1/30X10일X1/12	= 2,397
			호봉제	2,105,655,000원X1/30X10일X1/12	= 58,491
		14,132	10 일시사역인부임		
			청사정비 관리인부	31,600원X1명X120일	= 3,792
			행정자료실 관리인부	31,600원X2명X150일	= 9,480
			법정부담금		= 860
120	경상적경비	564,017			
	201 일반운영비	205,400			
		205,400	01 일반운영비		
			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		= 205,400
	202 여비	54,157			
		54,157	01 국내여비		
			업무추진 기본여비		= 49,157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
			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추진	=	5,000	
	203 업무추진비	71,780				
		20,600	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			
			소장	=	20,600	
		6,480	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			
			정원가산금	80,000원X81명 =	6,480	
		30,000	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		
			해양수산종합시책추진	=	25,000	
			어업지원 및 수산개발 정책추진	=	5,000	
		14,700	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			
			31인이상(35명)	375,000원X1과X12월 =	4,500	
			30인이하	350,000원X1과X12월 =	4,200	
			15인이하	250,000원X2과X12월 =	6,000	
	204 직무수행경비	232,680				
		24,600	01 직책급업무추진비			
			소장	650,000원X1명X12월 =	7,800	
			과장	350,000원X4명X12월 =	16,800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
		161,280	02 직급보조비		
			3급	500,000원X1명X12월 =	6,000
			4급	400,000원X3명X12월 =	14,400
			5급	250,000원X12명X12월 =	36,000
			6급	155,000원X15명X12월 =	27,900
			7급	140,000원X14명X12월 =	23,520
			8~9급	105,000원X7명X12월 =	8,820
			기능6급	155,000원X3명X12월 =	5,580
			기능7급	140,000원X9명X12월 =	15,120
			기능8~9급	105,000원X19명X12월 =	23,940
		46,800	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		
			대민활동비	50,000원X78명X12월 =	46,800
200	사업예산	1,850,000			
220	자체사업	1,850,000			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1,850,000			
		1,85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
			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	=	1,800,000
			해안 빈지·나지 녹화사업	=	50,000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				
31G2	어촌 생활기반 확충	4,932,125	[국	0	도	1,632,125	기	0	균	3,300,000	분	0]
200	사업예산	4,932,125	[국	0	도	1,632,125	기	0	균	3,300,000	분	0]
210	보조사업	4,932,125	[국	0	도	1,632,125	기	0	균	3,300,000	분	0]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4,932,125										
		4,932,125			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	
						어촌관광단지 조성					=	3,000,000
			[국	0	도	1,000,000	기	0	균	2,000,000	분	0]
						어촌종합개발					=	1,203,125
			[국	0	도	103,125	기	0	균	1,100,000	분	0]
						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					=	729,000
			[국	0	도	529,000	기	0	균	200,000	분	0]
31G3	신지식 어업인 육성	143,936	[국	12,000	도	131,936	기	0	균	0	분	0]
100	경상예산	83,000										
120	경상적경비	83,000										
	202 여비	8,000										
		8,000				01 국내여비						
						강원해양수산포럼 운영					=	5,000
						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					=	3,000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				
	301 일반보상금	5,000										
		5,000	10	행사실비보상금								
				해양수산물관련 행사운영			=	5,000				
	307 민간이전	70,000										
		70,000	02	민간경상보조								
				강원해양수산물포럼 운영			=	30,000				
				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			=	40,000				
200	사업예산	60,936	[국	12,000	도	48,936	기	0	균	0	분	0]
210	보조사업	48,000	[국	12,000	도	36,000	기	0	균	0	분	0]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48,000										
		48,000	02	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								
				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				=	48,000			
			[국	12,000	도	36,000	기	0	균	0	분	0]
220	자체사업	12,936										
	308 자치단체등이전	12,936										
		12,936	01	자치단체경상보조금								
				어업전문지 보급			=	12,936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국	도	기	균	분	0]
31G4	청사관리 및 민원실운영	42,977	[국 29,977	도 13,000	기 0	균 0	분 0	0]
100	경상예산	15,937	[국 15,937	도 0	기 0	균 0	분 0	0]
110	인건비	15,937	[국 15,937	도 0	기 0	균 0	분 0	0]
	101 인건비	15,937						
		15,937	10 일시사역인부임 여권발급업무 대행인부 기본급 [국 11,803 도 0 기 0 균 0 분 0] = 11,803 주·년차수당 [국 2,844 도 0 기 0 균 0 분 0] = 2,844 법정부담금 [국 1,290 도 0 기 0 균 0 분 0] = 860,000원X1.5명 = 1,290					
200	사업예산	27,040	[국 14,040	도 13,000	기 0	균 0	분 0	0]
210	보조사업	14,040	[국 14,040	도 0	기 0	균 0	분 0	0]
	201 일반운영비	9,000						
		9,000	01 일반운영비 여권발급운영 [국 9,000 도 0 기 0 균 0 분 0] = 9,000					
	202 여비	5,040		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	
장,관,항,세항,세세항	목								
		5,040	01	국내여비					
				여권발급업무 수행				=	5,040
				[국 5,040 도 0 기 0 균 0 분 0]					
220	자체사업	13,000							
	206	5,000		재료비					
		5,000	00	재료비				=	5,000
				청사관리 운영물품					
	405	8,000		자산취득비					
		8,000	01	자산및물품취득비					
				복사기(1대)				=	4,000
				어업지도선 에어컨(1대)				=	900
				어업지도선 DVD(3대)				=	1,500
				냉장고(2대)				=	1,000
				청소기(1대)				=	200
				어업지도선사무실 식당의자(8개)				=	400
31H0	경쟁력있는 어업기반 확충	30,379,576			[국 11,055,000 도 10,004,576 기 0 균 9,170,000 분 150,000]				
31H1	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	18,565,176			[국 9,075,000 도 5,490,176 기 0 균 4,000,000 분 0]				
100	경상예산	51,176							

장:(3000)경제개발비

관:(3100)농수산개발비

항:(31H0)경쟁력있는 어업기반 확충

세항:(31H1)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

[환동해출장소] (단위:천원)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
	120 경상적경비	51,176						
	201 일반운영비	18,248						
		18,248	01 일반운영비					
			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	=	18,248			
	202 여비	32,928						
		32,928	01 국내여비					
			업무추진 기본여비	=	32,928			
	200 사업예산	18,514,000	[국 9,075,000 도 5,439,000 기 0 균 4,000,000 분 0]					
	210 보조사업	15,264,000	[국 9,075,000 도 2,189,000 기 0 균 4,000,000 분 0]					
	401 시설비및부대비	5,000,000						
		4,968,500	01 시설비					
			지방어항건설	=	4,968,500			
			[국 0 도 993,700 기 0 균 3,974,800 분 0]					
		31,500	03 시설부대비					
			지방어항건설	=	31,500			
			[국 0 도 6,300 기 0 균 25,200 분 0]					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10,264,000						
		10,264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
			연근해어업 구조조정 [국 8,600,000 도 1,075,000 기 0 균 0 분]		=	9,675,000 0]
			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[국 475,000 도 114,000 기 0 균 0 분]		=	589,000 0]
220	자체사업	3,250,000				
	307 민간이전	10,000				
		10,000	01 의료및구료비 잠수질병환자 치료지원		=	10,000
	401 시설비및부대비	1,200,000				
		1,196,380	01 시설비 지방어항 보수보강		=	1,196,380
		3,620	03 시설부대비 지방어항 보수보강		=	3,620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2,040,000				
		2,04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 불가사리 수매 어촌정주어항 개발 어촌어항 주변정비		=	90,000 1,200,000 300,000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	
			토사매몰 어항준설	=	150,000				
			어구 보수보관장 시설	=	200,000				
			외옹치항 물량장 및 낚시터조성	=	100,000				
31H2	기르는어업 육성	7,520,000	[국 500,000 도 2,420,000 기 0 균 4,600,000 분 0]						
200	사업예산	7,520,000	[국 500,000 도 2,420,000 기 0 균 4,600,000 분 0]						
210	보조사업	6,200,000	[국 500,000 도 1,100,000 기 0 균 4,600,000 분 0]						
	401 시설비및부대비	2,250,000							
		2,193,800	01 시설비						
			인공어초시설	=	2,193,800				
			[국 0 도 438,760 기 0 균 1,755,040 분 0]						
		56,200	03 시설부대비						
			인공어초시설	=	16,200				
			[국 0 도 3,240 기 0 균 12,960 분 0]						
			인공어초제작장 부지사용료	=	20,000				
			[국 0 도 4,000 기 0 균 16,000 분 0]						
			인공어초시설사업지 적지조사비	=	20,000				
			[국 0 도 4,000 기 0 균 16,000 분 0]						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3,950,000							
		2,10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
장,관,항,세항,세세항	목							
			수산종묘 매입방류 [국 0 도 270,000 기 0 균 1,330,000 분]	=	1,600,000	0]		
			소규모 바다목장화 [국 500,000 도 0 기 0 균 0 분]	=	500,000	0]		
		1,850,000	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					
			어초어장관리(1,250ha) [국 0 도 125,000 기 0 균 500,000 분]	=	625,000	0]		
			해중림조성(90ha) [국 0 도 225,000 기 0 균 900,000 분]	=	1,125,000	0]		
			수산종묘 방류효과조사 [국 0 도 30,000 기 0 균 70,000 분]	=	100,000	0]		
220	자체사업	1,320,000						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1,320,000						
		1,32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
			소규모 바다목장화	=	300,000			
			지역특화 양식단지조성	=	300,000			
			친환경 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	=	120,000			
			해조숲조성	=	100,000			
			다품종양성기 지원	=	400,000			
			육상순환여과 흰다리새우 양식	=	100,000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				
31H3	내수면 자원조성	672,400	[국	80,000	도	442,400	기	0	균	0	분	150,000]
200	사업예산	672,400	[국	80,000	도	442,400	기	0	균	0	분	150,000]
210	보조사업	90,000	[국	80,000	도	10,000	기	0	균	0	분	0]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90,000										
		9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				
			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									
			[국	80,000	도	10,000	기	0	균	0	분	= 90,000 0]
220	자체사업	582,400	[국	0	도	432,400	기	0	균	0	분	150,000]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582,400										
		582,4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				
			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= 200,000									
			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 = 90,000									
			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= 15,000									
			부선식 선착장 건립 = 50,000									
			내수면 어구·어망세척 고압분사기 지원 = 17,400									
			연어치어방류 = 210,000									
			[국	0	도	60,000	기	0	균	0	분	150,000]
31H4	유통시설조성 및 수산물가치제 고	3,622,000	[국	1,400,000	도	1,652,000	기	0	균	570,000	분	0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				
			[국	0	도	90,000	기	0	균	240,000	분	0]
			수산물 직매장시설							=		160,000
			[국	0	도	40,000	기	0	균	120,000	분	0]
	220 자체사업	812,000										
		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		812,000						
						812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
							클린위판장 시설			=		200,000
							묵호항 위판장 옥개시설 현대화			=		200,000
							가공공장 위생관리 지원			=		297,000
							위판어획물 세척시설지원			=		90,000
							내수면어종 상품화			=		25,000
	3110 어업인 생산활동지원	2,126,597	[국	0	도	2,026,597	기	0	균	100,000	분	0]
	3111 어업생산활동 지원	1,844,597	[국	0	도	1,744,597	기	0	균	100,000	분	0]
	100 경상예산	466,597										
	120 경상적경비	466,597										
			201 일반운영비			255,277						
						235,277	01 일반운영비					
							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			=		235,277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
		20,000	02 행사운영비					
			제8회 한·일 수산세미나 개최 = 20,000					
	202 여비	86,320						
		86,320	01 국내여비					
			업무추진 기본여비 = 82,320					
			수산교류협력추진 = 2,000					
			어선현대화지원 사업추진 = 2,000					
	301 일반보상금	25,000						
		17,000	08 외빈초청여비					
			제8회 한·일 수산세미나 개최 = 17,000					
		8,000	10 행사실비보상금					
			제8회 한·일 수산세미나 개최 = 8,000					
	307 민간이전	100,000						
		100,000	02 민간경상보조					
			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= 100,000					
200 사업예산		1,378,000	[국 0 도 1,278,000 기 0 균 100,000 분 0]					
210 보조사업		150,000	[국 0 도 50,000 기 0 균 100,000 분 0]	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150,000				
		15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
			다목적 인양기			= 150,000
			[국 0 도 50,000 기 0 균 100,000 분 0]			
220	자체사업	1,228,000				
	308 자치단체등이전	840,000				
		840,00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			
			외국인선원숙소 운영비 지원			= 40,000
			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			= 800,000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388,000				
		388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
			노후선외기 대체지원			= 100,000
			유압식양망기 시설개선			= 120,000
			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			= 40,000
			소형어선용 냉장고 지원			= 48,000
			어선연료절감(정화)기 지원			= 80,000
3112	자원보호와 어업질서정착	142,000				
200	사업예산	142,000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
220	자체사업	142,000			
	401 시설비및부대비	142,000			
		142,000	01 시설비		
			어업지도선 정기수리	=	142,000
3113	해난어업인 유족 지원	140,000			
100	경상예산	40,000			
120	경상적경비	40,000			
	202 여비	2,000			
		2,000	01 국내여비		
			유가족 생활안정자금지원 추진	=	2,000
	307 민간이전	38,000			
		38,000	02 민간경상보조		
			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	=	6,000
			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	=	32,000
400	예비비등	100,000			
420	기타	100,000			
	702 기금전출금	100,000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					
		100,000	00 기금전출금										
			해난어업인유가족 지원기금 = 100,000										
31J0	동해안보존과 해양기반조성	8,545,028	[국	2,450,000	도	1,820,028	기	0	균	4,275,000	분	0]	
31J1	친환경적 동해안 개발·보존	3,723,238	[국	0	도	498,238	기	0	균	3,225,000	분	0]	
100	경상예산	54,238											
120	경상적경비	54,238											
	201 일반운영비	15,542											
		15,542	01 일반운영비										
			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						=	15,542			
	202 여비	28,696											
		28,696	01 국내여비										
			업무추진 기본여비						=	24,696			
			해안침식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						=	4,000			
	303 포상금	10,000											
		10,000	00 포상금										
			해수욕장운영 우수시군 시상						=	10,000			
200	사업예산	3,669,000	[국	0	도	444,000	기	0	균	3,225,000	분	0]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					
장,관,항,세항,세세항	목												
210	보조사업	3,225,000	[국	0	도	0	기	0	균	3,225,000	분	0]	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3,225,000											
		3,225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					
			연안정비(3개소)									=	3,225,000
			[국	0	도	0	기	0	균	3,225,000	분	0]	
220	자체사업	444,000											
	207 연구개발비	50,000											
		50,000	01 용역비										
			해안침식방지대책 수립									=	50,000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394,000											
		394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					
			횃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									=	144,000
			위판장 해수공급시설 정비									=	250,000
31J2	연안생태계보전 및 해양환경보호	1,580,000	[국	450,000	도	330,000	기	0	균	800,000	분	0]	
200	사업예산	1,580,000	[국	450,000	도	330,000	기	0	균	800,000	분	0]	
210	보조사업	1,340,000	[국	450,000	도	90,000	기	0	균	800,000	분	0]	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1,340,000							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	
		1,34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	
			조업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					=	540,000
			[국 450,000 도 90,000 기 0 균 0 분 0]						
			양식어장정화					=	440,000
			[국 0 도 0 기 0 균 440,000 분 0]						
			양식어장 침체어망 인양					=	360,000
			[국 0 도 0 기 0 균 360,000 분 0]						
220									
자체사업		240,000							
	403								
	자치단체자본이전	240,000							
		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	
			해안쓰레기 및 항·포구 환경 정화					=	180,000
			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					=	60,000
31J3									
해양관광·레저인프라 구축		2,680,790	[국 2,000,000 도 430,790 기 0 균 250,000 분 0]						
100									
경상예산		3,000							
120									
경상적경비		3,000							
	202								
	여비	3,000							
			01 국내여비						
			해수욕장 운영평가 및 점검					=	3,000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	
200	사업예산	2,677,790	[국 2,000,000	도 427,790	기 0	균 250,000	분 0]		
210	보조사업	2,362,500	[국 2,000,000	도 112,500	기 0	균 250,000	분 0]		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2,362,500							
		2,362,5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	
			해수욕장 주변정비 = 2,000,000						
			[국 2,000,000	도 0	기 0	균 0	분 0]		
			어촌체험마을조성 = 362,500						
			[국 0	도 112,500	기 0	균 250,000	분 0]		
220	자체사업	315,290							
	308 자치단체등이전	115,290							
		115,29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						
			해수욕장 질서 도우미 운영 = 115,290						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200,000							
		20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	
			동명항 야간경관 조성 = 200,000						
31J4	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조 성	561,000							
100	경상예산	11,000							
120	경상적경비	11,000							

장:(3000)경제개발비

관:(3100)농수산개발비

항:(31J0)동해안보존과 해양기반조성

세항:(31J4)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조성[환동해출장소] (단위:천원)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
	202 여비	3,000		
		3,000	01 국내여비	
			물동량 확충 포트세일즈 추진	= 3,000
	307 민간이전	8,000		
		8,000	02 민간경상보조	
			포트세일즈 추진 해외 유료시장 조사	= 8,000
200	사업예산	550,000		
220	자체사업	550,000		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550,000		
		550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
			속초항 구수로 교량공사	= 500,000
			속초항 선박급유시설 설치	= 50,000
부 서 합 계		52,355,719		